

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[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]

의안 번호	10-28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☐ 위탁사무명

-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

☐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22조(위탁운영) 및 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) 및 제7조(의회 동의 및 보고), 제17조(재위탁)

○ 필요성

-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운영 필요

☐ **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**

- 민간위탁 기간 : 2027. 3. 1. ~ 2032. 2. 28.(5년)

※ 「안산시영유아보육조례」 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에 따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함.

-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
- 그 외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※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)

☐ **수탁자 선정방식**
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- 심사방법 :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

- 심사결정 :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
70점 이상자 중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수탁자로 결정

- 심사기준 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
위탁제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심의

심 사 항 목	항목별 점수
가. 어린이집 운영계획	40
나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35
다. 운영체의 운영실적	10
라. 운영체의 공신력	10
마. 운영체의 재정능력	5
합 계	100

※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(교육부고시2024-13호)

☐ 위탁시설 개요

(단위 : 명 / m²)

시 설 명	소 재 지	現위탁 운영자	정원 (현원)	교직원수	연면적	위탁 유형
시립안산스마트 허브어린이집	단원구 동산로 37	최○옥	51 (16)	9	496	재위탁

☐ 시설별 보육아동 규모

(단위 : 개 / 명)

어린이집명	구분	계	0세	0,1세 혼합반	1세	1,2세 혼합반	2세	3세	3,4세 혼합반	4세	4,5세 혼합반	5세	장애아
시립안산 스마트허브	반	5	2	-	1	-	2	-	-	-	-	-	-
	인원	16	3	-	5	-	8	-	-	-	-	-	-

☐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 【붙임 2】

☐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□ 부 대 의 건

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[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]

- 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지나치게 적은 수준으로, 시설 및 인력 대비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.
특히 예산 부담이 큰 인건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임.
- 또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, 시간제 보육센터 등 시민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.